

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「2022년 전남형 맞돌봄·맞살림」 프로젝트 업무협약서

전남여성가족재단 일·생활균형지원센터와 강진군가족센터, 곡성군가족센터, 광양시가족센터, 구례군가족센터, 나주시가족센터, 순천시가족센터, 진도군가족센터, 화순군가족센터(명칭 가나다 순, 이하 “협약기관”이라 한다)는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및 평등한 부부의 육아·가사 실천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「2022년 전남형 맞돌봄·맞살림」 프로젝트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및 남성의 육아·가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·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원칙)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경험 등을 공유·활용하고, 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.

제3조 (협력내용)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협약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맞돌봄·맞살림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2. 협약기관 간 맞돌봄·맞살림관련 교육, 체험, 캠페인, 홍보 등에 관한 사항
3. 협약기관 간 지역 내 돌봄 수요 파악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사항
4. 협약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종사자와 관계자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
5. 향후 상호 협의가능한 중장기 과제 제안 및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사항

제4조 (협약이행) 각 협약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협약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제5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그 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. 단, 협약해지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.

제6조 (협약의 변경 등) 본 협약에 대한 변경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협약의 보관)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2년 4월 18일

 전남여성가족재단
Jeonnam Foundation of Women & Family
원장 안 경 주



 강진군 가족센터
센터장 윤 정 선



 곡성군 가족센터
센터장 이 금 주



 광양시 가족센터
센터장 손 경 화



 구례군 가족센터
센터장 도 윤



 나주시 가족센터
센터장 하 양 진



 순천시 가족센터
센터장 김 성 희



 진도군 가족센터
센터장 조 경 순



 화순군 가족센터
센터장 김 종 식

